

서 면 답 변 서

소 속	경 제 체 육 과	질문위원	장 문 혁 위 원	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경제체육과장)	일 자	질의	2017년 11월 29일
			답변	2017년 11월 30일
회 의	제233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			

질문요지

- 평창FC 선수가 2017년 강원도민체육대회 미출전 사유
- 평창군과 광주광산FC 연고지이전 시 협약내용

답변내용

- 강원도체육회 주관 '제52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참가요강'에 의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참가하지 못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.

(참가요강 4번 '참가자격' 라 항목)

- '단체경기종목에 참가하는 대학팀선수는 소속 대학이 단일팀으로 참가할 경우에는 대학 소재지 시·군으로 우선 참가'
- '대학선수와 일반선수 혼성으로 참가할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또는 초·중·고등학교 졸업 연고지 시·군으로 참가' 기준

⇒ 평창FC선수단은 단일팀 대학 소재지 기준이나 혼성팀 기준의 등록기준지·관내 초·중·고 졸업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참가하지 못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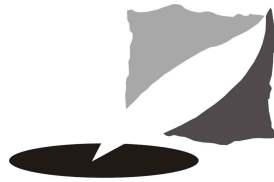
※ 「붙임1」 참가요강

- 「붙임2」 평창군-광주광산FC 연고지이전 협약서(MOU)

「붙임1」

제52회 강원도민체육대회

참 가 요 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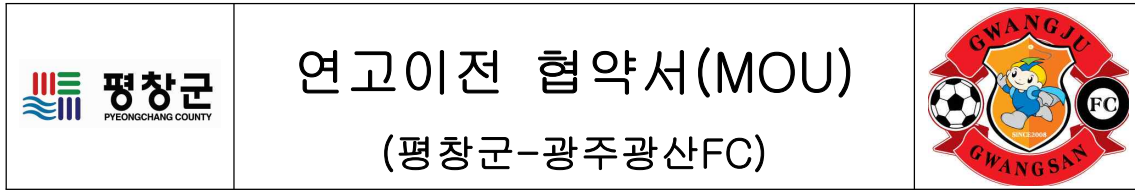


강원도체육회
Gangwondo Sports Council

강 원 도 체 육 회

- 3) 대학부와 일반부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 단체경기종목에 참가하는 대학팀선수는
- ① 소속 대학이 단일팀으로 참가할 경우에는 대학 소재지 시·군으로 우선 참가할 수 있으며,
 - ② 대학선수와 일반선수를 혼성하여 참가할 경우에는 4)호의 대학부가 없는 개인 경기종목에 참가하는 대학선수의 참가 자격을 적용한다.
- 4) 대학부가 없는 개인 및 개인단체종목 참가 우선순위
- ① 중·고등학교를 대학 소재지 시·군에서 졸업한 경우 대학 소재지 시·군
 - ② 등록기준지 또는 초·중·고등학교 졸업연고지 시·군 단, 강원체고 졸업선수는 중학교 졸업 연고지 시·군(동의서 제출)
 - ③ 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연고지 시·군이 다를 경우 해당 선수의 동의를 받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연고지 시·군 참가(동의서 제출)
 - ④ 선수등록지 시·군
- 5) 대학부가 있는 경기종목의 대학선수는 일반부에 참가할 수 없다.
- 6) 경기방법을 단체전으로 실시하는 개인경기종목의 대학선수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.(해당종목:테니스,정구,탁구,검도,궁도,양궁,사격, 체조,펜싱,배드민턴,볼링,근대5종,골프 이상 13개 종목)
- ㉠ 단일소속(학교)으로만 구성이 되었을 경우 선수등록지로 우선 참가한다.
 - ㉡ 대학부가 있는 경기종목은 한국체대와 용인대학을 제외한 타 시·도 대학 선수는 참가할 수 없으며, 도내 소재 대학선수로 선발팀을 구성할 경우 우선 순위는 2)-①②③항을 적용한다.
 - ㉢ 대학부가 없는 경기종목은 해당 시·군으로 참가 자격이 있는 타 시·도 대학 선수와 혼성하여 참가할 수 있다.
 - ㉣ 1개 시·군에서 2개 팀 이상 육성하는 시·군은 선수를 선발하여 혼성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.

「붙임2」



제1조(목적) 평창군(이하 ‘HAPPY 700 평창군민축구단; 평창FC’ 라 함)과 광주광산FC(이하 ‘광산FC’ 라 함)는 연고이전협약 및 챌린저스리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(별첨 1),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협약한다.

제2조(기관 참여와 협조) “평창군”은 ‘평창FC’가 챌린저스리그에 참가할 수 있는 재정지원(별첨 1)과 경기 운영에 관한 환경적 여건을 지원하고 광주광산FC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협의 내용을 준수한다.

1. “광산FC”는 연고이전협약서에 따라 “HAPPY 700 평창군민축구단; 평창FC”로 팀명을 변경해야 한다.
2. “평창FC”는 「연고이전협약서 및 사업계획서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한다.

제3조(사업비 지급)

1. 평창군은 평창군민축구단(평창FC)의 사업 운영비를 협약에 따라 성실히 지급해야 하고 평창군민축구단은 사업비를 사업비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.
 - ① 사 업 기 간 : 2015. 01 - 2019.12(5년)
(단,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중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)
 - ② 연간 사업비 : 200,000,000(2억)
2. 사업비 신청, 집행, 정산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라야 한다.
3. 플레이오프, 챔피언 결정전, FA컵 진출시 연간 사업비(2억) 이외에 예산범위내에서 경기당 5백만원의 출전비를 지급한다.

제4조(협약의 변경)

1. “평창FC”는 사업계획의 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.

제5조(기타 협의 내용)

1. 협약 유효기간 동안 팀의 명칭은 평창군에서 정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다.

2. 협약 유효기간 동안 대한축구협회 등록 대표자(구단주)는 평창군수로 하며 단장 및 구단의 인사보직 변경의 권한은 단장(장재훈)이 갖는다.
3. 본 사업 진행(챌린저스리그 참가) 중 유니폼 및 기타를 이용하여 후원 기관이 평창군임을 밝혀야 하고, 그 외의 후원사는 평창군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유니폼 및 A보드 등에 부착할 수 있다.
4. 연고지 평창이전시 선수단 전원은 평창군으로 주소 이전을 해야 한다.
5. 동계/하계 전지훈련 캠프는 평창군 관내로 해야 하고 기간은 연간 40일을 전후로 해야 하며 기후 및 시합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전지훈련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. 전지훈련에 필요한 외부 전지훈련팀의 편의제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.
6. 동계/하계 전지훈련을 위한 외부 축구 팀 10~15팀 유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.
7.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해 평창군 관내 선수 등록을 적극 협조한다. 단 등록된 선수는 모든 훈련에 참가해야 하며 기량을 인정받아야 한다.
8.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 출신 선수 1~3명은 호남대학교 축구학과에 입학 을 추천한다. 단 대학 특기자 전형 입시 요강에 충족해야 한다.
9. 지역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유스팀 창단에 적극 협조하고, 발전 육성지원금을 일부 보조한다.
10. 어웨이 경기시 평창군 및 동계올림픽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.
11. 선수단 이동 버스(구단버스)에 평창군 올림픽 홍보물을 부착한다.
12. A-보드 및 광고 수익은 전액 평창군 수입으로 한다.
13. 평창FC 선수는 계약기간 군입대자는 상근으로 추천하여 병역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협조를 평창군에서 적극 알선한다.
14. 흥경기 시 경기 진행은 평창군(평창군 축구협회)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진행하고 준비 해야 한다.
15. 본 협약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은 협약 기간에 따른다. 협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5개월 전 재협약 건에 대해 상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.
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“평창군” , “광주광산FC” 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4년 11월 일

평 창 군
군수 **심 재 국**

광주광산FC
단장 **장 재 훈**